

#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 대상 안내

귀하(사)께서는 소유차량 중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하셔야 합니다. 본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장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히 단말장치를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환경부, 산자부, 소방청 등 위험물질 관계 부처가 보유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이므로 차량 소유주, 주소 등의 정보가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 □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 대상 안내

○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도로 운송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 위험물질을 운송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○ 위험물질의 종류 및 차량 최대적재량 기준(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)

| 위험물질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적재량 기준*           | 관계기관                  | 관련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위험물<br>(휘발유, 경유, 등유 등)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,000L 이상<br>운송차량  | 소방청 /<br>소방산업기술원      | 위험물안전관리법<br>제2조제1항제1호             |
| 지정 폐기물**<br>(폐산, 폐유, 폐합성 수지 등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,000kg 이상<br>운송차량 | 환경부 /<br>한국환경공단       |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                    |
| 유해화학물질<br>(황산, 염산, 질산 등)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,000kg 이상<br>운송차량  | 환경부 /<br>화학물질안전원      |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                   |
| 고압가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연성가스<br>(LPG, LNG, 수소 등) | 6,000kg 이상<br>운송차량  | 산업통상자원부 /<br>한국가스안전공사 |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<br>제2조제1항제1호, 제2호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독성가스<br>(불화수소, 염화수소 등)    | 2,000kg 이상<br>운송차량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자동차등록원부의 최대적재량 기준으로 대상차량을 구분

\*\* 지정 폐기물의 경우 액상폐기물, 금속성 분진·분말로 한정 (의료폐기물 제외)

## □ 단말장치 장착 관련 지원 내용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224 참조)

○ 단말장치 : 단말장치 및 장착 비용은 설치 의무자 본인 부담

○ 통 신 비 : 단말장치의 무선통신비는 월 최대 50% 지원(상한액 월 8,250원)  
단, 지원기간은 정부부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## □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의무

○ 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29조의2에 따라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 점검·관리를 통해 정상 작동을 유지해야 하며,

위험물질 운송하기 전 사전운송계획정보를 입력

- (단말장치 점검·관리)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규격을 준수하는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 시 정상작동 유지·관리(단말장치 규격에 관한 고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)

\*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전화 문의(☎ 1899-2793, 내선번호 2번)

- (운송계획정보 입력)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운전자 정보, 위험물질 종류, 운송계획 등 사전에 정보 입력(<http://hmts.kotsa.or.kr>)

\* 단말장치, 모바일 웹, PC에서 사전운송계획서 작성 가능

\*\* A/S 지연(순번 대기, 회수 점검 등) 발생으로 단말장치를 통해 사전운송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운송차량의 소유자, 운전자 또는 관련 사업장의 관계인은 PC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사전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여야 함

## □ 행정조치

○ 단속(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29조의2, 시행규칙 제2조의5)

- 단말장치의 장착·운용에 대한 위반 여부 확인 후 단속 적발 시 행정조치 의뢰

○ 개선명령(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29조의3, 시행규칙 제2조의6)

- 단말장치 미장착, 단말장치 장착 기술기준 미준수의 경우 시도지사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서를 발급

-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함

○ 운행중지 명령(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29조의3, 시행규칙 제2조의7)

-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운행중지 명령서를 발급

○ 과태료(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별표 4)

| 관련법령        | 위반내용                     | 과태료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이상 |
| 법 제29조의2제1항 | 단말장치 미장착                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
| 법 제29조의2제2항 | 단말장치 점검·관리 미준수, 정상작동 미유지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
| 법 제29조의2제5항 | 운송계획정보 미입력, 거짓입력        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
| 법 제29조의2제8항 | 출입·조사(단속 등) 거부·방해·기피    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

## ☐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 신청서 접수

- 접수 방법 : 선호하는 통신사(단말장치)를 선택하여 장착 신청 전화 접수(상시)
- 장착 시기 : 신청서류 접수 이후 통신사 장착 일정에 따라 장착

| 통신사 | 접수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KT  | 전 국 02-2040-0776<br>(fax 0502-777-3169) | 위험물질단말장치 장착 신청 전용 전화 |
| 에스원 | 전 국 1544-3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선번호 2번 UVIS         |

- \* 통신계약과 관련한 세부 약정사항과 단말장치 장착 일정은 통신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\*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신속한 단말장치 장착을 위하여 각 통신사에서 별도의 통신계약 홍보 형 팜플렛이 발송되거나 또는 전화 등이 송신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신중히 통신사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\* 통신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무선통신계약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개인정보 3자 제공동의서, 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이용동의서 등의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.  
(통신사에서 양식 제공, 작성 후 통신사에 제출)

### ※ 통신사별 단말장치 안내(상세 사양 및 기능은 통신사로 문의)

| 구분  | K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에스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조사 | 씨스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트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능  | 표준운행기록장치(DTG), 화물차전용 내비게이션, GPS, 관제센터 스피커 통화장치, 내비게이션 기반 사전운송계획등록 기능, 사고충격감지 기능, 통행제한구간 알림기능, DTG기록 무선 자동전송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진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- \* 단말장치의 기능 구성 : 표준운행기록장치(DTG), 화물차전용 내비게이션, GPS, 관제센터 스피커 통화장치(사고 비상콜 기능 포함), 내비게이션 기반 사전운송계획등록 기능, 사고충격감지 기능, 통행제한구간 알림기능, DTG기록 무선 자동전송 등.

※ 기타 문의 :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 상담 헬프데스크(주간) ☎ 1899-2793(내선번호 2번).

끝.